

U.I.N.L 제25차 세계총회 참관보고서

(2007. 10. 3. ~ 6.)

윤 정 석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법무법인세창 변호사

I. 서언

국제공증인협회(U.I.N.L) 제25차 세계총회가 2007. 10. 3.(수)~10. 6.(토)까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총회가 1948년에 개최된 후 통상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미 위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내어 회원가입을 추진하여 온 한국의 대한공증협회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조희종 대한공증협회장, 안원모 섭외이사, 윤정석 총무이사 등 3인이 참가하여 이번 총회에서의 한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행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2가지 사항 즉 “한국 공증법상 공증인의 임기가 5년이고 이를 재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공증인법 제15조)” 및 “대한공증협회 설립의 임의성(공증인법 제77조의 2)”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고, 이에 대한 추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회원가입이 보류되었다.

II. 회의 일정

1. 회의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켄벤션센터 (Palacio Municipal de Congresos in Madrid)

2. 토의주제

- 토픽 1 :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증행위
- 토픽 2 : 도시 및 지방에서의 공증행위 실태

3. 진행방식

회의의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였으며, 불어, 이태리어, 영어, 독일어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배포된 대부분의 문서는 스페인어로 된 것이어서 해독하기가 불가능하였으나 일단 후일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참가자들도 대부분 스페인어권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 다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진행에는 무리가 없었다.

(1) 개회식

개회식은 대강당인 오라토리움에서 2007. 10. 3. 12:40 회의 첫날 오전 회의가 종료한 직후에 열렸다. 개회식은 스페인 왕세자가 연단 중앙의 최상석에 자리잡고 공식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대 회조직위원장, 국제공증인협회장, 스페인, 마드리드 공증협회장, 스페인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의 축사에 이어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축사를 하였다.

(2) 첫째 날

첫째날의 토픽1에 대한 회의에서는 회의진행 책임자가 기조발언을 한 후 사전에 발표신청을 한 각국의 공증인들이 주제에 관련하여 준비한 리포트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후 전체적인 마무리 논평을 하였다.

최근 세계은행 부총재가 ‘공증행위’ 및 ‘공증비용’이 과연 사회발전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혹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도이나에 관하여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진술한 것이 문제가 된 듯, 발표자들은 공증인의 공증활동이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분쟁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증수수료가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 대다수의 논조였다.

(3) 둘째 날

둘째 날의 토픽2에서는 각국의 공증행위 실태에 관한 국별보고서(Country Report)의 발표에서 공증제도의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공증제도를 정착 중이거나 초기 시행단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정을 엿볼 수 있었다.

회의진행은 9:30~13:30 오전 회의 후 14:00 중식, 15:30~20:00까지 오후 회의를 진행한 후, 20:30부터 칵테일 파티(첫째 날)/ 문화공연(둘째 날)등으로 하루 종일 일정이 빡빡하였다.

4. 회의장 주변풍경

회의실 주변의 북도 등지에는 각국에서 온 공증인들이 자신들이 발표하는 리포트를 배포하거나 자국의 공증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마드리드 공증협회는 별

도의 방실을 준비하여 월회보, 업무 참고도서 등 협회에서 출간한 여러 가지 책자와 보고서 등을 배포하고 있었다.

각국의 공증인들은 그 나라의 공증인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변호사들과 직원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공증인이라는 자격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세계총회를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여 가족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총회 사무국에서도 동반자들을 위한 별도의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두고 있었다.

5. 한국참가자들의 활동

개·폐회식, 회의일정에 전부 참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 일본 대표단과의 협의 및 오찬
- 중국대표단과의 면담
- 아시아 부회장 사다유키 후나바시와의 협의
- 집행위원장 장폴 드꼬르와의 협의
- 캐나다, 멕시코, 우르과이, 파라과이, 독일, 푸에르토리코, 미국 앨라배마주, 벨기에 공증인들과의 오찬 시 동석 및 개별담화

등 대한공증협회의 가입을 위한 섭외활동 및 타국 공증인들과의 친목도모활동을 수행하였다.

III. 국제공증협회 개관

1. 국제공증인협회의 창립

국제공증인협회는 1948년 19개국의 공증협회 대표자들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창립회원 19개국은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에쿠아도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푸르토리코, 스위스, 우르과이 등이다.

1948. 10. 2. 헌장(Charter)의 형태로 승인된 원래의 정관은 1950. 10. 2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총회(Congress)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제공증인협회는 전 세계 공증인의 기능과 공증업무의 촉진, 조정,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증인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조직이지만, 개인과 법인에 대한 최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증인의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의 성격은 비정부기구(NGO)이다.

2. 국제공증인협회의 설립목적

- 라틴계 공증인제도의 근본원칙 및 공증인협회 회원들의 총회에서 승인된 공증인 윤리원칙의 촉진 및 적용
-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공증인 직역을 대표
- 국제기구들의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참여
- 각국의 공증협회 등 국가기구와의 협력
- 라틴계 공증인의 근본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증제도의 시행과 협력에 관한 법률의 연구
- 공증인에 관련된 법령의 연구 및 체계적인 수집
- 국제적 회의 촉진 및 개별국가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문가적 회합의 지원
- 다음과 같은 분야에의 관계정립
 - 공증인협회를 개선중인 국가나 공증인협회가 아직 없는 국가들을 상대로 그 개선 및 구성을 지원하여 국제공증인협회에 가입시키는 것
 - 공증인제도에 접목될 수 있는 법제도를 가진 국가의 공증기구들과 관계 수립
 - 각국의 법의 발전에 공헌

3. 국제공증인협회의 활동분야

국제공증인협회는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공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들 간의 특별한 능력있는 대화중개자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공증인제도의 근본원칙에 입각한 정신에 기초하여 각국 공증인협회, 각국 의회, 국제적 및 초국가적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 국제기구
 -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는 UINL에게 특별부문 자문적 지위를 수여하였음 (special category consultative status)
 - 유엔헌장 제71조 및 유엔결의안 1996/31호에 규정된 이 지위는 국가들, 유엔사무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각 전문기구들에 대한 기술적 전문가, 조언자, 자문인으로서 유엔이 실행중인 프로그램과 목표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을 허용받고 있음
 - WTO와 관련하여 국제공증인협회가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있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참여하고 있음
- 국제정부간기구(IGO :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유럽위원회,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 국제사법에 대한 헤이그 회의 등
- 초국가적, 지역적 기구
 -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공동체 재판소, 미주기구, 국제해양협회, 라틴아메리

카와 카리브연안 경제위원회, 북미자유무역기구 등

○ 각종 국제 비정부기구(NGO)

–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판사협회, 국제법협회, 국제변호사협회(IBA)

4. 회원국(총 75개국)

국제공증인협회의 각 회원들은 개별적인 각국위원회 혹은 동일한 개별국가기구 또는 지역적 혹은 주단위의 협회지부나 조직을 대표한다. 각 국가는 한 표의 투표권만 있다.

○ 유럽(34개국)

–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런던(U.K.),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다비아, 모나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스페인, 터키, 바티칸.

○ 아메리카(23개국)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쿠아도르, 구아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루이지애나(U.S.A.),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우루구아이, 베네수엘라.

○ 아프리카(15개국)

– 알제리, 베닝,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 아프리카, 차드, 콩고, 가봉,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모로코, 니제르, 세네갈, 토고.

○ 아시아(3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5. 특별관계에 있는 국가(Privileged Relations)

국제공증인협회는 각국 혹은 국가연합에서 공증인 업무를 하고 있는 아래의 전문법률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회원가입을 요청하였다.

미국 조지아주, 모리셔스제도, 카자흐스탄, 모리타니아, 우크라이나, 알라배마, 벨라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캐나다),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이란,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뉴질랜드, 필리핀, 세르비아, 세이셸, 한국, 텍사스주, 튀니지, 베트남.

IV. 맺음말

비록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보류되었으나 집행위원장 장 폴 드코르의 말에 의하면 금번 지적된 2가지 문제점만 보완되면 2008. 5.에 예정된 회의에서 한국의 회원가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점의 해소는 입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어서 쉽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제공증인협회가 걱정하는 것처럼 한국 공증인법의 공증인의 임기가 공증인 업무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제공증인협회에 보완 설명하는 한편, 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이 같은 점이 국제공증인협회에의 가입과정에 장애가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납득시켜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공증협회에의 가입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협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업무감독 등을 통한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서도 모든 공증인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대한공증협회에서도 이러한 국제공증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모든 공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리 각종 주제에 관한 리포트나 혹은 ‘국별 보고서’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증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